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

가

[시행 2019. 12. 30.] [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2019. 12. 30.,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0조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 >

부칙 <제2016-27호, 2016. 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0,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83,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21,000
폐농약, 폐유독물	630,000
폐석면	634,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380,000
폐산, 폐알칼리	421,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21,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73,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11,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21,000
건설폐기물	55,000
의료폐기물	1,227,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15,000
식물성잔재물		158,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21,000
	기 타	270,000
폐윤활유		84,000
폐축전지		89,000
폐드럼		17,700
폐산, 폐알칼리		421,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58,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58,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44,000
폐전선		204,000
폐오일필터		46,000
폐타이어		79,000
폐플라스틱 용기		53,000
폐규조토, 폐점토		58,000
폐페인트		380,000
광재	일반	111,000
	지정	121,000
분진	일반	111,000
	지정	121,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46,000
폐합성섬유		60,000
폐식용유		43,000
폐아연		46,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70,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11,000
	지정	121,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45,000
폐촉매		49,000
폐합성고무		100,000
철강슬래그		44,000
폐주물사, 폐사		50,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44,000
폐섬유류		57,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70,000
	피혁가공잔재물	172,000
폐석회, 폐석고		44,000
폐목재		68,000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의료폐기물		1,227,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동물성잔재물	215,000
식물성잔재물	158,000
유기성오니	158,000

비고 :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